

「교육혁신원 규정」 신구조문대비표

2022. 5. 16. 개정 판 (시행 2022. 5. 1.) → 2022. 3. 7. 개정 판 (시행 2022. 3. 7.)

바뀜 4 · 신설 0 · 삭제 0 · 번호 변경 0

공식 원본 law.syu.ac.kr · <https://suleap.syu.my/r/324/compare?from=1341&to=1289> · 내려받은 때 2026. 10. 21. 오전 8:53:03 · 밑줄은 바뀐 부분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사업) 교육혁신원은 대학 교육 혁신과 관련한 다음의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 <개정 2018-01-17> 1. 대학 교육 혁신과 관련된 연구 2. 교수-학습프로그램 관련 연구, 개발, 운영, 평가 및 교육환경 개선 사업 3. 교내 온라인 교육환경 구축 및 이러닝 콘텐츠 개발과 운영 4. 대학교육의 데이터 기반 질 관리 체제 구축 및 교육성과 관리 5.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 체제 구축 및 운영 6. 첨단멀티미디어 교육환경 구축 및 운영 7. 비교과교육과정의 기획, 관리, 연계방안 수립 및 비교과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8. 비교과 프로그램 요구조사 및 기획, 개발, 평가 9. 기타 교육혁신원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[제목개정 2020.02.24.]	제2조(사업) 교육혁신원은 대학 교육 혁신과 관련한 다음의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 <개정 2018-01-17> 1. 대학 교육 혁신과 관련된 연구 2. 교수-학습프로그램 관련 연구, 개발, 운영, 평가 및 교육환경 개선 사업 3. 교내 온라인 교육환경 구축 및 이러닝 콘텐츠 개발과 운영 4. 대학교육의 데이터 기반 질 관리 체제 구축 및 교육성과 관리 5. <u>핵심역량 진단 분석 및 개선</u> 6. <u>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 체제</u> 구축 및 운영 7. <u>첨단멀티미디어 교육환경</u> 구축 및 운영 8. <u>비교과교육과정의</u> 기획, 관리, 연계방안 수립 및 비교과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9. <u>비교과 프로그램</u> 요구조사 및 기획, 개발, 평가 10. 기타 교육혁신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[제목개정 2020.02.24.]
제3조(조직) 교육혁신원은 다음 각 호의 조직으로 구성한다.<개정 2019-05-13> 1. 교육혁신원장(이하 “원장”이라 한다.) 2. 교육혁신원 운영위원회 3. 교수학습개발센터 4. 교육인증센터 5. 원격교육지원센터 6. 비교과통합센터	제3조(조직) 교육혁신원은 다음 각 호의 조직으로 구성한다.<개정 2019-05-13> 1. 교육혁신단장(이하 “단장”이라 한다.) 2. 교육혁신단운영위원회 3. <삭제> 2020.02.24 4. 교수학습개발센터 5. 데이터기반질관리센터 6. <삭제> 2019.05.13 7. 원격교육지원센터 8. <삭제> 2019.05.13. 9. 비교과통합센터
제7조(교육인증센터) 교육인증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.<개정 2019-05-01> 1. 수업의 질 개선을 위한 분석 및 연구 2. 교육 성과분석 및 교수학습과정 분석 3. 교육서비스에 대한 분석 및 개선 지원 4.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 5. 교육과정 분석 및 평가 6. 기타 센터의 목적에 부합되는 업무 [제목개정 2019.05.13.]	제7조(데이터기반질관리센터) 데이터기반질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.<개정 2019-05-01> 1. <u>핵심역량진단도구 개발 및 연구</u> 2. <u>핵심역량 진단 및 분석</u> 3. <u>핵심역량 관련 컨설팅</u> 4. 수업의 질 개선을 위한 분석 및 연구 5. 교육 성과분석 및 교수학습과정 분석 6. 교육서비스에 대한 분석 및 개선 지원 7.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 8. 교육과정 분석 및 평가 9. 기타 센터의 목적에 부합되는 업무

현 행	개 정 안
	[제목개정 2019.05.13.]
제12조(교육혁신원 운영위원회) ① 교육혁신원의 주요업무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논의를 위해 교육혁신원 운영위원회를 둔다. <개정 2022-03-07> ②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고, 총장(위원장), 교육혁신원장(서기), 교목처장, 기획처장, 교무처장, 학생처장, 글로벌사회혁신원장, 스미스학부대학장, 일자리본부장, 교수학습개발센터장, 비교과통합센터장, 교육인증센터장, 원격교육지원센터팀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18-01-17> ③ 위원회의 당연직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. ④ 위원회의 구성, 기능, 임기 및 회의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교육혁신원 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른다. <신설 2020-02-24> [제목개정 2020.02.24., 2022.01.17]	제12조(교육혁신원 운영위원회) ① 교육혁신원의 주요업무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논의를 위해 교육혁신원 운영위원회를 둔다. <개정 2022-03-07> ②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고, 총장(위원장), 교육혁신원장(서기), 교목처장, 기획처장, 교무처장, 학생처장, 글로벌사회혁신원장, 스미스학부대학장, 일자리본부장, 교육혁신원팀장, 원격교육지원센터팀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18-01-17> ③ 위원회의 당연직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. ④ 위원회의 구성, 기능, 임기 및 회의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교육혁신원 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른다. <신설 2020-02-24> [제목개정 2020.02.24., 2022.01.17]